

2026년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공고 대상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2026. 1. 7.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목 차

I. 2026년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행 공고	
1. 공고 대상	2
2. 공고 대상 연구개발과제 안내	3
3. 일반 및 유의사항	7
II.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14
2. 신청서류 접수일정 및 방법	16
3.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18
4. 기타	21
III.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안)	23
2. 평가항목 및 배점	24
3. 평가점수 산정방법	26
4. 가점 및 감점 기준	27
5. 기타	29
IV.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기준	31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33
3.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	33
4.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	38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39
6. 기술료 납부	39
7. 기타	40
V. 신청 관련 Q&A	41
VI. 과제제안요구서(RFP)	47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56

I. 2026년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행 공고

1. 공고 대상

가.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사업 개요

- 총 연구개발기간 : '26.4~'30.12(4년 9개월)
 - (1차 공모) 연구개발기간 : '26.4~'28.12(2년 9개월)
 - (2차 공모 예정) 연구개발기간 : '27.4~'29.12(2년 9개월)
 - (3차 공모 예정) 연구개발기간 : '28.4~'30.12(2년 9개월)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0,818백만원 이내
 -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 사업규모,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은 정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1차 공모)」 사업 개요

- 총 연구개발기간 : '26.4~'28.12(2년 9개월)
 - 1단계 연구개발기간 : '26.4~'26.12(9개월), 30개 내외 과제
 - 2단계 연구개발기간 : '27.1~'28.12(24개월), 15개 내외 과제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과제당 670백만원 이내(총 11,000백만원 이내)
 - 1단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과제당 70백만원 이내(총 2,000백만원 이내)
 - 2단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과제당 600백만원 이내(총 9,000백만원 이내)
- ※ 사업규모,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은 정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공고 대상 연구개발과제(1차 공모, 30개 과제 내외 선정)

연구개발과제명	총 연구개발기간 ('26년 연구개발기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26.4.~'28.12., 2년 9개월 ('26.4.~'26.12., 9개월)	과제당 670백만원 이내 (과제당 70백만원 이내) * 30개 과제 기준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 공고 대상 연구개발과제 안내

가. 지원기술

- 국토교통 융합분야 기초연구(TRL 1~2단계) 성과물을 개발연구(TRL 3~5단계 이상)로 확장 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 ① 국토교통 분야 산업전환 대응 및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국토교통+첨단 신기술 개발로 ② 국토교통 주요 R&D 투자 아젠다에 해당하는 융·복합 기술중심 지원
 - (① 지원분야) 아래의 국토교통 분야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여 제시

< 국토교통 분야(9개 분류) >

구분	A	B	C	D	E	F	G	H	I
분야	건축	도로교통	도시공간	물류	수소인프라	철도	플랜트	항공	SOC

- (② 중점지원 기술분야) 국토교통 R&D 투자 아젠다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여 제시

< 국토교통 R&D 투자 아젠다(8개 분류) >

분야	세부 분야	분야	세부 분야
① 첨단 모빌리티	모빌리티 기술	⑤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	친환경 교통시스템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안전성 평가·인증체계
	자율협력주행		
② 수소	미래 수소 생태계 확산	⑥ 안전/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국토교통 안전망 구축
	수소 생산·저장·운송		
	수소 활용		생활편의 개선 서비스
③ 저탄소 도시/건축	에너지 효율개선	⑦ SOC 건설/관리 효율화	스마트 유지관리
	그린 리모델링		디지털 생산성 향상
	탄소중립도시		고효율 스마트 재료
④ 친환경 플랜트	에너지 저장·활용	⑧ 기타	
	해외 플랜트 실증		
	미개척 신수요 대응		-

* 국토교통 산업혁신과 기업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R&D 투자전략('25.11, KAIA) [참고8]

-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한 기술내용에 대하여 위의 분류 중 각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첫장의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란에 기재

* 기재 예시 :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A 건축 - ① 첨단 모빌리티

나. 지원요건

- (연구책임자) 국토교통·융합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19.1.1. 이후) 신진연구자
 - 연구책임자는 본 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 성과* 보유 필수
 - * 최근 5년 이내(21.1.1. 이후) 출판되었거나 출판이 확정된 국토교통 분야 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및 국토교통 분야 출원 또는 등록 특허
- (연구개발기관 구성) 컨소시엄(주관 및 공동) 구성 필수
 -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중소기업(1개 이상) 포함

<지원요건 충족여부 예시>

- 예시1) (주관) 대학(연구책임자: 신진연구자) + (공동) 중소기업 ⇒ 지원 가능
- 예시2) (주관) 중소기업(연구책임자: 신진연구자) + (공동) 대학 ⇒ 지원 가능
- 예시3) (주관) 중소기업(연구책임자: 신진연구자) + (공동) 중소기업 ⇒ 지원 가능
- 예시4) (주관) 대학(연구책임자: 신진연구자 이외) + (공동) 중소기업(신진연구자 참여) ⇒ 지원 불가능
- 예시5) (주관) 중소기업(연구책임자: 신진연구자 이외) + (공동) 대학(신진연구자 참여) ⇒ 지원 불가능
- 예시6) (주관) 중소기업(연구책임자: 신진연구자) + (공동) X ⇒ 지원 불가능

- (컨소시엄 구성 유예) 사업 신청 시 컨소시엄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명을 미정으로 표기할 수 있음
 -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미정인 경우, 기관명 외에 공동연구개발기관 확보 방안, 추진 체계, 기관 역할, 연구비 등 모든 관련 내용은 반드시 제시해야 함
 - * 미정인 공동개발기관명은 “○○”, “△△” 등으로 표기
 - 단계평가 시 미정으로 표기한 기관을 반드시 제시(참여의향서 등)해야 하며, 미제시 시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단계평가 대상에서 제외
 - * 단계평가 자료 제출 시 컨소시엄 구성(중소기업 포함)을 완료하여야 함

다. 선정평가

- 선정평가를 1차 서면평가(비대면)와 2차 발표평가(대면)로 나누어 추진
- 1차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2차 발표평가 대상 선정
- 평가일정(일자, 시간, 장소 등)은 전문기관이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평가관련 세부사항(평가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음

라. 단계평가 사전 안내사항

- 본 사업은 1단계(개념검증연구)와 2단계(현장준비연구)로 구분하여 연구 수행
 -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50% 이내 과제만 2단계 연구(2~3차년도) 지원
 - 1단계(9개월) : '26년 4월 ~ '26년 12월 / 0.7억원 이내
 - 2단계(2년) : '27년 1월 ~ '28년 12월 / 6억원(4억+2억) 이내
- ※ 단계별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과제 선별 지원(1단계 수행 후 단계평가로 상위 50% 이내 과제만 2단계 지원)
- 2단계는 연구개발기관(주관 또는 공동)에 중소기업 1개 이상 반드시 포함
 - 기준 미 충족시,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단계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신청시 제시한 연구개발계획서 내 성과목표·지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성과목표·지표는 선정평가 시 평가항목으로 하향 조정되지 않음
- 본 사업의 2단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본 사업의 신규 공고('27년 이후)에 지원할 수 없음

마. 기타

-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26.1.22.(목) 13:30~14:30 / Zoom
 - * '26.1.20(화)까지 아래 링크에서 참석 신청한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화상회의 회의 접속링크(회의 ID, 암호 등) 제공
 - ※ 사전 신청 링크 : <https://naver.me/GuDjklQ1>
- 접수과제 수가 지원과제 수(30개) 미만일 경우, 재공고 실시

바. 추진절차(안)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1차) 추진절차(안)>

구분	수행주체	주요내용	추진시기
사업 공고	전문기관	• 공모계획 공고	'26.1.7. ~ '26.2.9. 18:00 
신청서류 제출·검토	신청기관 → 전문기관	• 서류 온라인 접수 (보완서류 포함)	'26.1.16. ~ '26.2.9. 18:00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30개 내외 과제 선정)	'26.2. ~ '26.3. 
1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선정평가 결과 알림 및 협약서류 제출	'26.4. 
1단계 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 1단계 개념검증연구 수행	'26.4. ~ 12. 
1단계 단계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 1단계 연구성과 및 2단계 계획 평가(15개 내외 과제 선정)	'26.11. ~ 12. 
2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평가결과 알림 및 2단계 협약서류 제출	'26.12. ~ '27.1. 
2단계 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 2단계 현장준비연구 수행	'27.1. ~ '28.12. 
최종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 사업 최종평가	'28.12. ~ '29.3.

* 추진일정은 심의 등 행정 처리기간 소요에 따라 변동 가능

3. 일반 및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성된 권소시엄으로 신청

용어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비 지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을 위해 참여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봄



-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연구개발기관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 명확성 등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척될 수 있음
- ※ 본 사업은 위탁연구개발기관 편성을 지양(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로서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위탁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 수행 가능)

-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공고 안내서의 “VI.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작성
 -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세부 연구개발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명확한 사유와 근거 제시 필요
-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및 과제 특성을 반영한 고유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하되 연구개발 성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질적 지표 50% 이상 반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1) 논문 성과 관련 : SCIE 논문 ○건 등록 → 게재한 SCIE 논문의 피인용도 • 예시2) 특허 성과 관련 : 특허 ○건 등록 → ○○ 분야 표준 특허 창출, 등록 특허의 SMART 점수 • 예시3) 사업화 성과 관련 : 사업화 ○건 달성 → 사업화에 의한 매출 및 매출기여도 |
|--|

- 공고 안내서의 “VI.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성과지표에 공통 지표를 반드시 제시

- ※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및 목표 도전성”은 선정평가 항목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하향 조정되지 않으니 신중히 제시할 것
 ※ 향후 선정평가,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음

구분	1단계(1차년도)	2단계(2차년도, 3차년도)
공통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현장준비연구)의 연구개발계획서 • 학술 논문 게재(확정) 1건 이상 또는 특허 출원 1건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첨단·신기술의 기술시연 및 시작품 • 학술 논문 • 지식재산권(특허 출원 또는 등록) • 후속 기술개발 제안서 및 기술사업화 계획 등
자율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및 과제 특성을 반영한 고유 성과목표·지표 설정 	

- 선정평가 시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로 발표**(PPT 등 별도자료 사용 불가)
 - 연구책임자가 보유한 연구성과(논문·특허)의 구체적인 연계·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계획에 포함 필수
- 제안하는 연구개발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중 중복성이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과제명 작성시 [참고1] 연구개발과제명 작성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
 -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연구개발과제명 란에 원제목 병기

< 예시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中

연구개발과제명	000기술 적용을 위한 00m급 장대교량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원제목 :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	---

- 본 공고 관련 일반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국가연구 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을 따름
 -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의 ‘사업’-‘국토 교통R&D’-‘규정 · 서식 · 매뉴얼’ 참고
- 상기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나. 유의사항

- 본 사업 내 연구개발과제는 총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며, 단계별 평가(관문형)를 원칙으로 하며, 단계평가(1단계, 30개 과제 내외) 결과에 따라 2단계(15개 내외 과제) 지원 여부 결정
-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혁신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외의 비용을 부담(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제4호)
 - ※ 영리기관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을 포함, 이하 공기업)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이 아닌 기업, 이하 대기업)
 - 영리기관은 혁신법 시행령 별표1(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에 부합하도록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필요**
 - ※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 · 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부담 제외(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 운영규정 별표3)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단, 별지7호에 대해 연구개발 과제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인정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상 하기 업태(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선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

업태(종목)	업태(종목)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919.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22. 환경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자(한국연구산업협회 증명서 발급)
 -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로서 해당 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연구원
 -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
-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과제 추진시 역할이 명확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해야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채용 계획을 반드시 제시 필요(운영규정 제29조제6항, 관리지침 제22조제5항 · 제6항)

※ 본 공고 안내서의 “IV.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4.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 참고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모든 중소 기업은 연차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협약시 및 연차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관리지침 제11조제4항, 제21조제4항·제7항)
 - ※ 본 공고 안내서의 “IV.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참고
- 보험기간은 각 연차시작일~해당 단계종료일+9개월이며, 이행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 가능
- 단,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 보상배수 1.0배 이상 모두 만족하는 기업은 면제(선정평가 이후 협약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및 **사업화**가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 필히 제시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 파일럿 테스트,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계획 제시
 -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략 및 계획)에 상세히 제시
-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관리는 혁신법 제16조에 따르며 컨소시엄 구성시 사전에 협의하여 효과적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
- 우수특허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전략 수립계획, 연구종료 연차의 최종성과분석 계획 등을 연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시할 것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 기술료를 징수해야 함**
 - ※ 본 공고 안내서의 “IV.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6. 기술료 납부” 참고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혁신법 및 혁신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납부
 -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등

- 동 사업은 신진연구자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에 따라 연구책임자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시 변경되는 기관이 본 공고안내서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변경 등 협약 변경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 포기시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및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 단,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지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계별 기준일(1단계 6개월 초과, 2단계 12개월 초과)이 경과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 연구책임자의 현 소속기관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오리엔테이션, 네트워킹, 교육, 포럼, 홍보활동 등 부처 및 전문기관 추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단계평가 시 반영)

II.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 혁신법 제2조제3호,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

나.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참여제한

- 신청 마감일 기준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또는 기관
- 신청 마감일 기준 관리지침 별표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할 경우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창업 3년 미만 기업 제외)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21.01.01 시행)의 연구책임자의 최대 동시수행 가능 과제수(3개)를 감안하여 신청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 본문2 > 내에 있는 1. 연구개발기관 현황,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란에 신청중(또는 신청예정)이거나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상세히 작성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음

-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혁신법 시행령 제5조 제1호·제2호의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혁신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혁신법 제2조제3호의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

다.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구성시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인 신진연구자는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내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내 타 과제의 연구자로 참여 불가
- 동일기관(주관·공동)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 내에서는 중복 참여가 불가 하나, 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는 가능
- 최종 과제제안요구서(RFP)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기획자는 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 불가
-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개발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
- '26년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규 공모 사업 중 자유 공모 사업^{*}은 기관이 동일 기술로 1개 연구개발과제만 수행 가능
 - * ¹⁾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²⁾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 사업, ³⁾협력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선도기술탐색형, 한-스페인 양자협력형)

2. 신청서류 접수일정 및 방법

가. 접수일정

공고기간	인터넷(전산) 입력 및 신청서류 접수
'26.1.7.(수)~'26.2.9.(월) 18:00까지(34일)	'26.1.16.(금)~'26.2.9.(월) 18:00까지(25일)

나.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26.1.22.(목) 13:30~14:30 / Zoom

* '26.1.20(화)까지 아래 링크에서 참석 신청한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화상회의 회의 접속링크(회의 ID, 암호 등) 제공
※ 사전 신청 링크 : <https://naver.me/GuDjklQ1>

다. 인터넷(전산) 입력 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에 접속하여 사업공고 메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선택하여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참고6] IRIS 전산접수 매뉴얼 참고
- 인터넷 입력 마감일 18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되므로, 종료 전에 입력 뿐 아니라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 기한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 인터넷 입력 시, 신청서류 업로드, 연구자 등록, 기관 등록 등에 소요 되는 시간과 PC 권장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서류 접수 요망

라. 문의처

- 공고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글로벌성장협력실
이송이 선임연구원(031-389-6348 및 6479, songyi03@kaia.re.kr)
* 문의 전 공고안내서 및 Q&A 참고 후 이메일 문의 요망(공고기간 유선문의 폭주 예상)
- 연구비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고객센터
 - (KAIA) KAIA 접속 → 참여 → FAQ 및 Q&A
 - (IRIS) IRIS 접속 → 알림·고객 → R&D 신문고
- 접수오류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고객센터
 - (게시판) IRIS 접속 → 알림·고객 → R&D 신문고 / 고객센터 안내
 - (콜센터) 1877-2041(부가통화) / 042-862-1500(일반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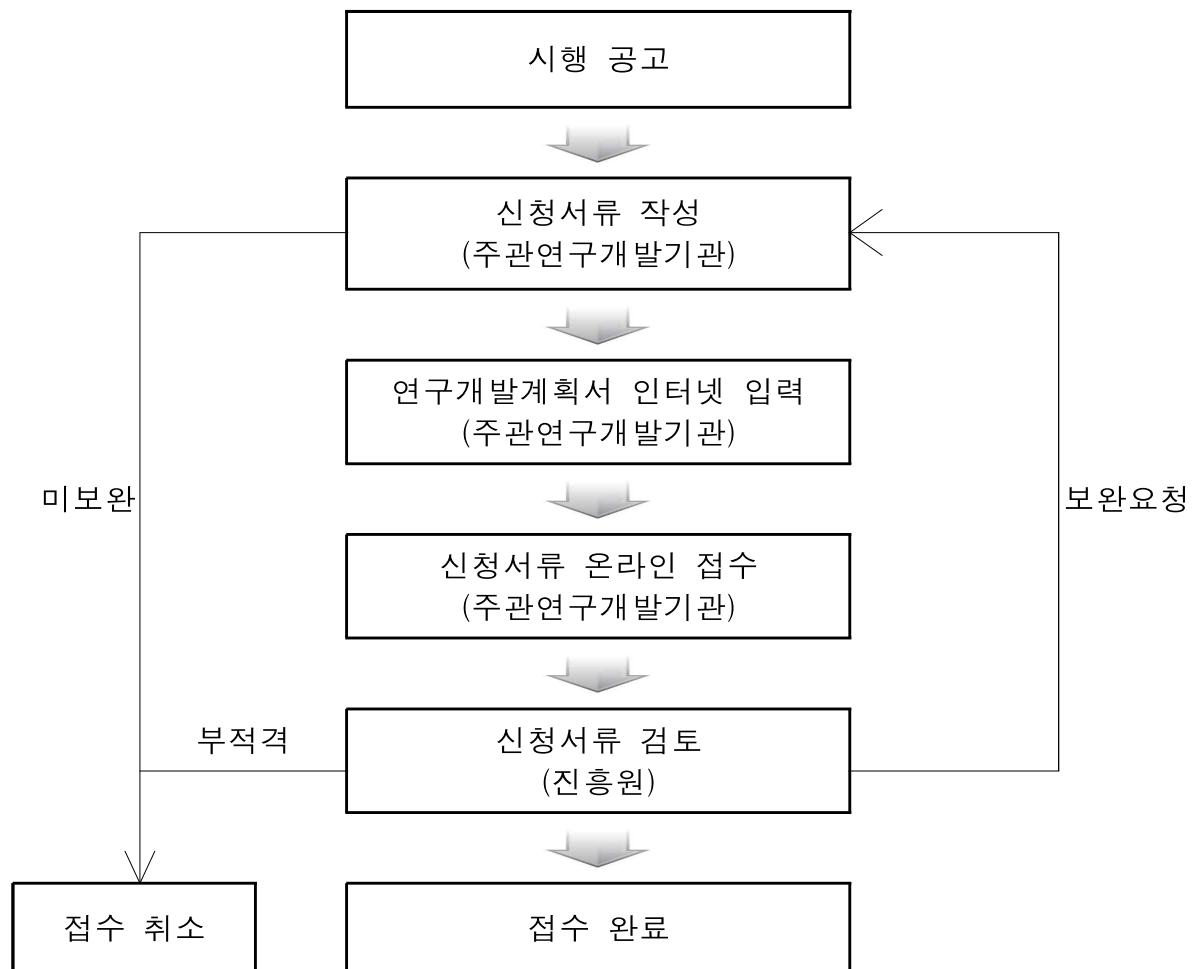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휴일 및 공휴일 제외

3.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관리지침 제12조제2항)

연번	항목	필수 여부	비고
1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문서24 등을 통해 전자공문으로 제출 권고) ※ 전자공문 발송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문서24를 활용하여 전자공문 발송 가능, 사용방법은 [참고9] 문서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참고	필수	-
2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신청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	필수	서식1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필수	서식2
4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서식3
5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필수	서식4
6	RFP 자체검토 의견서	필수	서식5
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전체연구기간 대상) ※ 3천만원 이하의 장비는 별첨 '연구시설 장비별 구축계획서'만 작성 * 3천만원~1억원 미만 : 전문기관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 대상 * 1억원 이상 : 과기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사평가단의 심의 대상	해당시	서식6
8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기관별)	필수	-
9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한국연구산업협회 증명서 발급)	해당시	-
10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해당시	서식7
11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 ※ 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중견기업 확인서: 중견기업정보마당(https://www.mme.or.kr/)	해당시	-
12	표준재무제표 증명(최근 2년) ※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받아 제출	해당시	-
13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영리기관만 해당, 공기업, 출연연 제외) ※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받아 제출	해당시	-
14	신용평가조회 결과서 사본 (영리기관만 해당, 공기업, 출연연 제외) *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미제출	해당시	-
15	청렴서약서(신청기관/연구책임자)	필수	서식8
16	청년인력 신규채용 확인서	해당시	서식9
17	신진연구자 자격 확인서(신청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	필수	서식10
18	차별성 검토 대상(유사과제) 검색결과(NTIS 발급)	필수	-

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절차



다. 신청서류 접수

- 신청공문은 가능한 전자공문*으로 접수하며, 마감시한(접수마감일 18:00) 내 제출 필수
※ (전자공문 사용방법) [참고9] 문서24(<https://docu.gdoc.go.kr/index.do>)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참고
- 신청서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ID로 접속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입력 및 업로드
 - 제출 마감시한 내 기관담당자 승인까지 완료
 - 정보별 입력 및 저장 후 [최종확인] → [제출] → [기관담당자 승인]
 - ※ 연구책임자 제출 마감 이후 신규 접수는 절대 불가하며, 연구책임자 제출 완료된 과제라도 기관담당자 승인 마감이 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처리 불가
 - 온라인 접수를 위해 “[참고6] IRIS 전산접수 매뉴얼” 확인 및 ‘IRIS 연구개발 과제 접수전 이행사항’ 필독 후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사전에 준비 필요

라. 신청서류 작성요령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자료 양식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전산접수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되도록 작성하고 제시된 보안등급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
- 연구개발계획서는 [서식1]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식 <본문 1>^{*}은 100쪽 이내로 작성 필수(초과되는 분량(101쪽이후)은 선정평가자료에서 제외)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략 및 계획”,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7. 성과점검기준표는 쪽수에 미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자료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 조치

마. 신청서류 검토 및 처리(관리지침 제12조 제4항 · 제5항 참고)

-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반려
 - 신청공문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관리지침 별표1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 반려

- 연구개발계획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단,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혁신법 시행령 별표1)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최종 과제제안요구서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기획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관리지침 별표1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혁신법 관련 행정규칙*, 운영규정, 관리지침 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 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상기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III.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안]

절차	방법 및 내용	일정
시행 공고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기관(진흥원)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 공고 및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26.01.07. ~ '26.02.09. 18:00
신청서류 검토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기관(진흥원) : 신청서류 검토*(필요시 보완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제한 해당 여부, 신청자격 적합 여부, 제출필요 서류 누락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청서류 보완(전문기관 요청시) 	'26.02.
사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기관(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의 RFP와의 부합성,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등 선정평가 사전검토 	'26.02 ~ 03.
연구개발과제평가단 1차 서면평가(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부합성·차별성 평가 및 (2단계) 연구개발계획 등에 대한 서면평가(비대면) 	'26.03.
1차 서면평가 결과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발표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 확정 주관연구개발기관에 2차 발표평가 대상 알림 	'26.03.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차 발표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추진전략 및 방법의 구체성 등에 대한 발표평가(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유의사항) 발표자료는 신청서류 접수시 제출한 연구개발 계획서를 사용하여 발표(PPT 등 별도자료 사용 불가)</u> 	'26.03.
총괄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최종 확정 	'26.03.
최종 평가결과 알림 및 협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부 보고 및 확정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선정평가 결과 알림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간 협약체결 	'26.04.

※ 신청서류 접수 이후의 일정, 평가 차수 등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1차 서면평가(100점)

- (1단계) 부합성·차별성 평가(1차 서면평가 생략시 2차 발표평가에서 평가)
 - RFP와의 부합성 및 차별성에 대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를 통해 평가대상 여부 결정
- ※ 부합하지 않거나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시(참석 평가위원의 과반 이상) 연구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2차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부합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차별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기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2단계) 연구개발계획 평가

기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목표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연구개발목표/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 및 창의성, 도전성• 단계별·연차별 연구개발목표/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 및 구체성	20
연구개발내용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내용·성과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연구개발내용 구성의 타당성 및 연계성• 최신 기술동향 분석 및 사전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지원금이 있는 경우 납부이행 관련 납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추진전략 및 계획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수행체계 구성의 타당성(적정기관수, 산학연 구성 등) 및 연구자의 전문성•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 신규 인력 채용 의지	20
활용방안 및 실용화 가능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성과 활용시나리오의 적절성 및 구체성•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및 가능성• 개발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효과	20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역량(관련분야 연구경험) 및 관리능력• 연구윤리 수준	25
계		100

※ 선정평가시 기준항목(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나. 2차 발표평가(100점+가·감점)

○ 연구개발계획 평가

- 1차 서면평가점수는 2차 발표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 2차 발표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반영해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종합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최종지원대상과제를 선정

기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목표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연구개발목표/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 및 창의성, 도전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연차별 연구개발목표/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연구개발내용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내용·성과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내용 구성의 타당성 및 연계성 • 최신 기술동향 분석 및 사전계획의 충실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지원금이 있는 경우 납부이행 관련 납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5
추진전략 및 계획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및 타당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체계 구성의 타당성(적정기관수, 산학연 구성 등) 및 연구자의 전문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 신규 인력 채용 의지 	5
활용방안 및 실용화 가능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성과 활용시나리오의 적절성 및 구체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및 가능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효과 	5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역량(관련분야 연구경험) 및 관리능력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윤리 수준 	5
계		100

※ 선정평가시 기준항목(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3. 평가점수 산정방법

가. 1차 서면평가(100점)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서면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부합성 평가' 결과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1차 서면평가 생략시 2차 발표평가에서 평가)
 - '차별성 평가' 결과 기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1차 서면평가 생략시 2차 발표평가에서 평가)
- 각 연구개발과제평가단별로 서면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2차 발표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 확정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우선 순위 내에서 서면평가점수가 동점인 연구개발 과제는 모두 2차 발표평가 대상에 포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서면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우선 순위와 무관하게 2차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1차 서면평가 시에는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하지 않음
 - ※ 가점 및 감점은 2차 발표평가 시에 부여
- 각 연구개발과제평가단별로 확정된 2차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2차 발표평가 실시

나. 2차 발표평가(100점+가·감점)

- 2차 발표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일정(일자, 시간, 장소 등)은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등)과 별도 협의없이 통보
-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로 발표하며, 제출한 서류 외 다른 자료는 활용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발표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1차 서면평가점수는 2차 발표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 2차 발표평가 시 발표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을 추가 부여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정
- 발표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조치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발표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고 가점 포함시 60점 이상일 경우 ‘탈락’, 발표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감점 포함시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조치
- 평가 당일 특별한 사유없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은 경우 ‘탈락’ 조치
 - ※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표가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해당 시 진흥원과 평가전 별도 협의 요망)

4. 가점 및 감점 기준

- 관리지침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 및 운영규정 별표2를 준용하여 연구 개발과제평가단 발표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을 부여
- 가점 및 감점은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증빙)와 이에 대해 관리 기관에서 요청한 보완사항을 보완한 자료를 근거로 발표평가점수에 합산하되,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에는 부여하지 않음
 - 신청기관은 가점 및 감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에 따라 해당 목록과 증빙서류 제출
 - 가점 및 감점의 적용기준일은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가점 및 감점 기준 >

구분	내 용
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발표평가점수의 2% 가점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른 신청 마감일을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을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발표평가점수의 1% 가점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 개발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발표평가점수의 1% 가점

구분	내 용
기술실시실적에 따른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한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발표평가점수의 1% 가점 ○ 제출한 기술실적 증빙 자료 내에 지원부처명(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명 등이 확인되어야만 실적 인정 가능
연구성과 포상에 따른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우수 연구개발 성과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적절한 포상(정부포상 훈격에 따른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과기부 장관상)을 받은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발표평가점수의 1% 가점
신기술 또는 녹색인증에 따른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중 1개 이상을 신규로 받은 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발표평가점수의 1% 가점(보호기간(지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 ○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녹색인증 및 확인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자 및 연구 개발기관이 관련 녹색기술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발표평가점수의 1% 가점(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
신진연구자에 대한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마감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발표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자나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발표평가점수의 4% 감점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에 따른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제재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발표평가점수의 2% 감점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납부기간 미준수에 따른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또는 같은조 제3항(제재처분에 대한 기지급 연구비의 환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간까지 미납한 경우 발표평가점수의 2% 감점

5. 기타

가. 선정평가

- 지원분야별 과제 수를 고려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분야별) 구성 예정
※ 각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별 가급적 동일 경쟁률로 운영하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 통합·조정될 수 있음
- 1차 서면평가는 경쟁률을 고려하여 필요시 생략 가능(이 경우 부합성 및 차별성 평가는 2차 발표평가에 포함)
- 2차 발표평가 결과에 의거 총괄심의위원회 대상 과제 선정

나. 총괄심의위원회

- 최종 지원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총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총괄심의위원회 위원은 각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을 우선 위촉하며, 위원장 참석이 어려울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위원 중 위촉
- 각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별 2차(발표)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과제 선정(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름)

<종합평가점수 동점 연구개발과제들의 우선순위>

- 1순위 : 가·감점을 제외한 2차 발표평가의 발표평가점수가 높은 과제
- 2순위 : 상대적으로 높은 도전적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를 제시한 과제
* 기타 총괄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따름

- 최종 지원 대상과제 선정 후 과제별 예산 등 조정
 - 잔여예산 발생시 차순위 과제 추가 선정 가능
- 협약포기기관 발생 등을 고려하여 예비 지원 대상 과제 선정 가능

※ 평가관련 사항은 별도 수립 예정인 선정평가 계획에 의거 변동 가능

IV.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연구개발비 지원 · 부담 기준

-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기준(혁신법 시행령 별표 1)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지원기준
가.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다.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라.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나. 연구시설 · 장비비
- 다. 기술도입비 · 연구재료비

라. 소프트웨어 활용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비고>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음. 다만,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자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2. 제2호에서 “평균매출액 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을 말한다.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 연구개발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 각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3.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

- 연구개발비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혁신법 시행령 별표2) 및 [참고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항목	사용용도
다. 연구시설 · 장비비	<p>1) 연구시설 · 장비 구입 · 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 시설 · 장비의 구입 · 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p> <p>2) 연구시설 · 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 · 장비의 임차비</p> <p>3) 연구시설 · 장비 운영 · 유지비 : 유지 · 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p> <p>4) 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 · 시설의 매입 · 임차 · 조성비, 설계 · 건축 · 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 · 설비비</p>
라. 연구재료비	<p>1)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 · 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p> <p>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p> <p>3)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 · 시험설비 제작비용</p>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 · 단체(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 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p>1)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p> <p>2)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p>
아. 연구활동비	<p>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 · 특허 · 표준 정보 조사 · 분석, 원천 · 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p> <p>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p> <p>3)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 세미나 개최 비용</p> <p>4)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p> <p>5)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 · 네트워크의 이용료</p> <p>6) 연구실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 비용</p> <p>7)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 · 훈련 비용, 학회 · 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p>

항목	사용용도
	<p>지출된 야근(특근) 식대</p> <p>8)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p> <p>9)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p> <p>1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p> <p>11)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p>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p>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p> <p>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p> <p>3) 제1호 나목 2)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p> <p>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p>

항목	사용 용도
	<p>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p> <p>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p> <p>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p> <p>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p> <p>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비용</p>
나. 연구지원비	<p>1)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p> <p>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p> <p>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p> <p>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p> <p>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p> <p>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p> <p>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p> <p>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p> <p>5)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p> <p>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p> <p>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차 관련 비용</p> <p>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p> <p>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p> <p>6)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p> <p>7)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p>
다. 성과활용 지원비	<p>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p> <p>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p> <p>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p> <p>다) 홍보전문가 양성</p> <p>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p> <p>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p> <p>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p> <p>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p> <p>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p>

항목	사용용도
	<p>라) 연구노트의 작성 ·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 · 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 · 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p> <p>3) 기술창업 출연 · 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p>

< 비고 >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 · 학사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 · 학석사통합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 2-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 2-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4.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

-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총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인력 신규채용
- (대상과제 및 기관) 연구개발과제 기준으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2개 이상의 영리기관이 참여할 경우 영리기관별 합계)이 5억원 이상인 과제, 채용주체는 영리기관(「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 ※ 연구개발과제에 2개 이상의 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영리기관간 협의를 통해 신규채용 주체 및 인원 결정
- (채용조건) 채용시점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과제 인건비계상을 100%, 1년 이상 고용 유지
 - ※ 군 복무기간만큼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여 추가인정 가능
- (채용시점)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 내에 일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단, 최초 참여 연차에 1명 이상 채용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차 종료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하여 채용 가능
 - ※ (예시) 총 연구개발기간이 3년인 과제에 3개 영리기관(A, B, C)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이 10억원인 경우(청년인력 의무채용 : 2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3억원 (6억원)	4억원 (10억원)	10억원
의무채용 인원	1명	1명	-	2명
의무채용 영리기관	A기관	C기관	-	-

- (서류제출) 영리기관은 협약시 청년인력 신규채용 확인서(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한 인력도 이에 포함)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 요청시 청년인력 신규채용 확인서 보완본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청년 인력 신규채용 확인서 등)를 진흥원에 제출
- (위반시) 계획한 청년인력을 미채용하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 할 경우, 기 지급된 인건비를 포함하여 해당 인력의 인건비 전액 불인정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 (개요) 연구비 부당집행액에 대한 회수율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대상과제 및 기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모든 중소기업
 - 단,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 보상배수 1.0배 이상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은 면제
※ 면제 기준 부합 여부는 협약시 별도 협의 요망
- (보험가입액)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각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보험가입액 세부사항은 협약시 별도 안내 예정
- (보험기간) 각 연차시작일~해당 단계종료일 + 9개월 가산
※ 연구개발비 단계정산 및 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 가산
- (보험료) 연구개발비(간접비)로 계상 가능
- (제출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 내 모든 중소기업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취합하여 협약서류와 함께 진흥원에 제출(협약시 제출)

6. 기술료 납부

- (개요)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 성과활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
※ 관련근거 : 혁신법 제18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
- (산정방법 및 납부기한)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금액 = 매출액 × 기술기여도 × 기술료율

납부대상	납부기준		납부상한 및 납부기간	
기업유형	부과기준	기술료율	납부상한(한도)	납부기간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과제협약)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의 10% 이하
중견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의 40% 이하

- 기술기여도는 ①수익(매출액)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이 활용된 제품의 비율(매출액 기여율)과 ②전체 연구개발활동 중 정부 R&D 비중 등을 고려하여 산정

$$\text{기술 기여도} = \frac{\text{제품 예상매출액}^*}{\text{기업(제품군) 예상 매출액}} \times \frac{\text{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text{총사업비}^{***}}$$

* 예상매출액 : 정부R&D 사업(총사업비)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매출액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분

*** 총 사업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Σ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기술기여도는 협약을 통해 비율을 정하고 납부액 산정시 과제 종료 후 정산 환수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과기부, '24.12))

7. 기타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혁신법 관련 행정규칙*, 운영규정, 관리지침 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참고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 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상기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V. 신청 관련 Q&A

[Q01]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신진연구자에 해당합니다. 소속기관이 없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01] 소속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속기관은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어떠한 형태든 본 공고안내서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기관이라면 가능합니다.

[Q02] '26년 2월 말에 박사학위 취득 예정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02] 취득 예정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19.1.1. 이후부터 접수 마감일 ('26.2.9.)까지 박사학위를 취득 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03] 현재 소속기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03] 지원 당시 소속(예정)기관은 최초 협약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소속기관 변경(예정) 관련 세부사항은 공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04] 협약 이후에 소속기관 변경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A04] 신진연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취지 상, 협약 당시의 신진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를 지속해야 합니다.

[Q05] 타 부처의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A05]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Q06] 동일인이 다른 연구개발내용으로 본 공고 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06] 동일 연구책임자는 본 공고 내 1개 과제에만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07] 동일 연구자가 본 공고 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 연구자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07] 연구자로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연구책임자로는 본 공고 내 1개 과제에만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08] 동일 기관에 소속된 신진연구자가 다수 있습니다. 동일 기관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본 공고 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가능한가요?

[A08] 연구책임자가 다를 경우 동일 기관도 주관연구기관으로 본 공고 내 다수 연구개발과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Q09]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입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에도 중소기업이 포함되어어야 하나요?

[A09] 중소기업 1개 이상이 포함된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이므로 중소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1개 이상이 포함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Q10] 신청 시 미정으로 표기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언제까지 제시해야 하나요?

[A10] 미정으로 표기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단계평가 시 반드시 제시(참여 의향서 등)해야 하며, 미제시 시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단계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1] 신청 시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미정으로 제시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대학, 정부출연연구원 등)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11] 신청 가능합니다.

[Q12] 신청 시 다수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미정으로 제시할 수 있나요?

[A12] 네. 가능합니다. 추진체계 구성 시 다수의 기관이 미정인 경우 각각 ○○, △△ 등을 활용하여 미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Q13] 신청 시 제시한 추진체계를 단계평가 시 변경 가능한가요?

[A13] 신청 시 제시한 추진체계, 기관별 역할 등은 1단계 개념검증연구를

통해 변경 가능하되, 명확한 역할과 필요성을 단계평가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Q14] 중소기업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1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타 서류 불인정).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한국중견기업협회(<https://www.mme.or.kr>)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타 서류 불인정)

[Q1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영리기관의 상환의무가 있습니까?

[A15]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16]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16]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은 관리지침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1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학회 또는 협회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가요?

[A17] 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기관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자격은 혁신법 제2조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기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8]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받는 연구책임자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A18]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해당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봅니다.

[Q19] 회계법인 위탁 정산 수수료는 어느 항목에 계상할 수 있습니까?

[A19] 위탁 정산 수수료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 하며, 연구개발비 규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고> 2025년 위탁정산수수료>

※ 위탁 정산 수수료 = 표준수수료 + 가산금

(단위 : 천원)

연구개발비 규모 * 당해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합 (현물 및 이월연구비는 미포함)	표준수수료(부가세 포함) '25.1.1~'25.12.31. 기간 내 신규 협약체결 과제	비고
0.5억원 미만	540	* (가산금)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라 5~10% 비율의 가산금 추가 <국외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외>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631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722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843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2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205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445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691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029	
100억원 이상	2,232	

공동연구 개발기관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의 5% (1개 기관 추가시마다)

[Q20] 가점 및 감점에서 예를 들어 최근 2년 이내의 경우 기준이 되는 일자는 언제인가요?

[A20] 가점 및 감점 적용 기준일은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6.02.09이] 신청 마감일인 경우 최근 2년 이내는 '24.02.10~'26.02.09(신청 마감일)까지가 해당됩니다.

[Q21] 가점 및 감점 기준이 적용되는,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누구인가요?

[A21] 신청인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됩니다.

[Q22] 신청서류 접수 이후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A22] 신청서류 접수 마감 이후에는 임의로 수정·보완을 하실 수 없으며, 접수시 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만 보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자의 보완요청사항 및 단순 오류의 정정사항 이외에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실 경우, 관리지침 제12조에 따라 거짓된 신청서류의 접수로 판단되어 신청서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3]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에게 현금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23]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한국연구산업협회 발급)는 인건비의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기관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VI. 과제제안요구서 (RFP)

연구과제명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1. 연구개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 분야 산업전환과 미래 新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융합연구 개발 및 현장적용 기회를 신진연구자에게 부여하여 신진연구자가 국토교통 중대형 R&D 사업기획과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연구자가 국토교통 현장중심 중대형 R&D의 차세대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R&D 추진 - 국토교통+첨단 신기술 융합연구 개발을 통해 산업전환에 기반이 되는 다양한 혁신연구 확대 - 신진연구자가 보유한 국토교통 융합분야 기초연구(TRL 1~2단계) 성과물을 개발연구(TRL 3~5단계 이상)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2. 연구개발 필요성	<p><input type="checkbox"/>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의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은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UAM 등 미래핵심 분야의 초격차 기술 개발, 인재양성 등에 역량을 집중하며 新산업 혁신인재에 대해 전략적 지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시장 주도권의 성패는 국토교통+첨단 신기술 융합연구의 고도화로 결정 ○ 국토부는 공간 및 이동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한 융·복합기술 기반의 R&D 확대를 통해 국토교통 융합분야 新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협력주행, 디지털 물류, 스마트건설 등 융합분야 연구에 대한 중점 지원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2023-2032」)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 확대로 연구인력 부족 심화 전망, 이를 대비하기 위한 인재확보 전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공급자 중심 인력양성 정책(대학중심, 학과 및 전공 기반)으로는 급변하는 첨단 신기술분야 인력수요 대응에 한계 - 미래 핵심인재 확보, 미래 융합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고령화 등 과학기술인력 감소, 미래 변화 대응 역량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춘 핵심 연구인력 양성 주력 * 국정과제⑦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을 통해 신진연구자를 전략적으로 확보 ○ 국토부 R&D 사업은 임무중심 및 문제해결형의 하향식 사업 위주로

	<p>도전·혁신적인 R&D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 전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R&D 발굴 및 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예: AI, 데이터, 딥테크 등)과 국토교통 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국토교통 도메인 기반의 융합인력 수요와 다양하고 새로운 R&D에 대한 수요 증가 <p>○ 국토교통 R&D는 임무지향 및 공공인프라 혁신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 되기 때문에 연구비, 연구기간 등 연구규모가 큰 중대형 과제(TRL 6단계 이상의 실용화 연구) 중심으로 연구책임자는 현장중심 중대형 R&D 관리 역량이 요구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 R&D의 특성상 국토교통 R&D 연구책임자는 중견연구자 쓸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신진연구자가 성장할 수 있는 R&D 지원 필요 <p>* 국토부 R&D 주관연구책임자 평균연령 54.8세(국가 R&D 평균연령 46.9세)</p>
3. 주요내용	
<input type="checkbox"/> 연구내용	<p><input type="checkbox"/> 국토교통 新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국토교통+첨단 신기술 개발</p> <p>○ 국토교통 융합분야 기초연구(TRL 1~2단계) 성과물을 개발연구(TRL 3~5단계 이상)로 확장 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연구자*가 보유한 최근 5년 이내('21.1.1. 이후) 기초연구 성과(논문 및 특허)**를 본 사업을 통해 개발연구 성과로 확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1. 이후 국토교통·융합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 (논문) 5년 이내('21.1.1. 이후) 출판되었거나 출판이 확정된 국토교통 분야 연구 실적(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특허) 5년 이내('21.1.1. 이후) 국토교통 분야 출원 또는 등록 특허 <p>○ 신진연구자가 국토교통 현장중심 중대형 R&D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현장중심 R&D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1단계 연구(개념검증연구)와 2단계 연구(현장준비연구)로 구분하여 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전체 연구기간 3년(연구 1~3차년도)에 대한 연구계획 포함 <p style="text-align: center;">< 과제의 단계 구성 및 지원내용 ></p>

4. 연구개발 추진방법	
<input type="checkbox"/>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 미래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첨단 신기술 개발 및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 ○ 단계별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과제 선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연구(개념검증연구)를 1차년도에 수행하고,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50% 이내 과제만 2단계 연구(현장준비연구, 2~3차년도)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연구는 주관기관 단독으로 수행 가능 • 1단계 연구를 주관기관 단독으로 수행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p>하고 1차년도에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 해야함 < 연구단계 및 일정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연구단계</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1단계</th>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d9e1f2;">2단계*</th> </tr> </thead> <tbody> <tr> <td>연구년차</td> <td>1차년도('26년)</td> <td>2차년도('27년)</td> <td>3차년도('28년)</td> </tr> <tr> <td>연구수행</td> <td>주관기관 단독 수행 가능 (연구책임자:신진연구자)</td> <td colspan="2">1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기관 컨소시엄으로 수행 필수</td> </tr> </tbody> </table> <p>* 1단계 연구 수행 과제 중 중 50% 내외를 선정하여, 2단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일정) 관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와 2단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 사업기간 3년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 국토교통+첨단 신기술 융합연구 개발의 핵심성과의 연차별 목표 및 수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성과 제시 및 그에 따른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연차별 세부 추진전략 및 일정계획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연차별 연구계획, 컨소시엄 구성 계획 및 기관별 구체적 역할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함 - 연구개발목표는 도전적으로 수립하고, 정량적으로 제시 ○ 단계별/연차별 성과 평가지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를 통해 예상되는 성과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제시(< 도전적 성과지표 >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 시 조정 될 수 있음 ○ 신진연구자가 보유한 기초연구 성과의 연계·확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개발계획에 포함 	연구단계	1단계	2단계*		연구년차	1차년도('26년)	2차년도('27년)	3차년도('28년)	연구수행	주관기관 단독 수행 가능 (연구책임자:신진연구자)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기관 컨소시엄으로 수행 필수	
연구단계	1단계	2단계*											
연구년차	1차년도('26년)	2차년도('27년)	3차년도('28년)										
연구수행	주관기관 단독 수행 가능 (연구책임자:신진연구자)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기관 컨소시엄으로 수행 필수											
<input type="checkbox"/>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개발과제는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 국토교통·융합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19.1.1. 이후) 연구자(신진연구자) - (과제별 지원규모) 최대 2년 9개월(9개월+2년), 6.7억원 이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연구(개념검증연구) 지원: 9개월, 0.7억원 이내 • 2단계 연구(현장준비연구) 지원: 2년, 6억원(2차년도 4억, 3차년도 2억)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간, 연도별 지원예산은 정부 예산 상황 등에 의거 변경 가능 - 선정평가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서류평가를 통해 2차 대면평가 대상자 선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 기술간 연계·활용, 최종 연구개발성과물의 실용화 등을 고려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총괄 역할을 수행 ○ 연구책임자(신진연구자)는 역할 분담의 필요성 및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p>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진행·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술의 실수요자인 민간기업의 적극 참여(연구개발기관, 정책대화, 기술협력 등)를 유도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 수행 <p>○ 컨소시엄 구성 시 과다한 연구개발기관의 참여 및 연구개발계획 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할 것</p> <p>※ 컨소시엄 구성은 합리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내용 및 역할이 종복 된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시 조정될 수 있음</p> <p>○ 연구개발과제 추진의 효율성 및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참여 기관 이외 타 기관 소속 연구자의 참여 배제</p> <p>○ 관련 기술 및 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활용하여 연구개발의 기술·정책적 보완사항 확인 및 반영</p> <p>○ 연구자의 연구 참여율을 높여 연구 집중도 제고 필요</p> <p>○ 산·학·연 간의 긴밀한 협력,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수요 지향적 기술개발 및 수행 체계 구축 필요(지속적인 기술 동향 조사 및 수요 조사 등)</p>
5. 최종 연구개발성과물	
□ 주요 최종 성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연구(개념검증연구) 성과물: 2단계(현장준비연구)의 연구개발계획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KCI) 이상의 논문(게재 확정) 1건 이상 또는 특허 출원 1건 이상 ○ 2단계 연구(현장준비연구) 성과물: 국토교통+첨단 신기술의 기술 시연 및 시작품, KCI 이상 논문 1편 이상, 지식재산권(특허), 후속 기술개발 제안서 및 기술사업화 계획 등
6.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활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연구자 주도 국토교통+첨단 신기술 융합기술을 국토교통 중대형 R&D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신규 수요 제안서와 신규 R&D 기획 참여 확대 - ‘국토교통 융합R&D 차세대 리더 40(안)’을 선정하여 연구성과물에 대한 사업화 및 홍보 등 지원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중심 연구역량을 갖춘 차세대 리더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신진연구자 성장경로(신진연구자⇒중견연구자)를 신진연구자⇒

	<p>차세대 리더⇒중견연구자로 세분화하여 신진연구자의 역할 및 성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첨단 신기술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연구 리더 양성 <p>○ 국토교통 미래 New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융합연구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 융합분야 도전·혁신적 R&D를 확산시켜 국토교통 산업을 첨단·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패위험이 높은 New 산업분야의 다양한 R&D를 지원하고, 그 성과를 중소기업이 활용하여 신산업 진입위험 축소, 중소기업의 첨단·융복합 산업전환 가속화 								
7.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									
	<p>○ 총 연구개발기간 : 2026.04~2030.12 (4년 9개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공모) 1단계('26년) 30개 내외, 2단계('27~'28년) 15개 이내 내외 <table border="1"> <tr> <td>1단계(개념검증연구)</td><td>1차년도 연구개발기간</td><td>2026.4~2026.12 (9개월)</td></tr> <tr> <td rowspan="2">2단계(현장준비연구)</td><td>2차년도 연구개발기간</td><td>2027.1~2027.12 (12개월)</td></tr> <tr> <td>3차년도 연구개발기간</td><td>2028.1~2028.12 (12개월)</td></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공모) 1단계('27년), 2단계('28~'29년) 지원규모 미정 - (3차 공모) 1단계('28년), 2단계('29~'30년) 지원규모 미정 <p>○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0,818 백만원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영리기관 참여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차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 연구개발비에 대한 구체적 산정내역을 제시해야 하며, 예산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축소 조정 가능 	1단계(개념검증연구)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2026.4~2026.12 (9개월)	2단계(현장준비연구)	2차년도 연구개발기간	2027.1~2027.12 (12개월)	3차년도 연구개발기간	2028.1~2028.12 (12개월)
1단계(개념검증연구)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2026.4~2026.12 (9개월)							
2단계(현장준비연구)	2차년도 연구개발기간	2027.1~2027.12 (12개월)							
	3차년도 연구개발기간	2028.1~2028.12 (12개월)							
8. 기타									
	<p>○ 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일반과제”임</p> <p>○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연구 개발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연구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연구개발내용을 가감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p> <p>○ 기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 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성과도서관-과제·보고서 및 www.ntis.go.kr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과제와 관련하여 기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계획에 포함 								

- 제안된 연구개발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 연구개발 수행 도중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개발 착수시점 현황과 개발종료 후의 대비가 가능하도록 핵심연구개발 성과별로 As-Is와 To-Be를 구체화·가시화하여 제시
-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성기술 간 연구개발내용 및 성과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전략 제시
 - 개발기술과 성과물 간의 유기적 연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예시) 개발기술 상호 간, 연구개발성과물 상호 간, 개발기술-연구개발 성과물 간 연계성
 - 과학기술적 성과물을 포함하여 최종 연구개발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제시
-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및 연구개발 일정계획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개발된 기술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신청자는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최종성과(핵심성과물)를 유형별(사양, 장비/장치,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으로 나열하고, 세부 설명 제시
 - 제시한 성과지표는 선정평가 또는 협약 시 조정(추가) 가능
 -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성과지표를 반영하고 그 외 과제특성을 고려한 고유 성과지표도 제안할 수 있음
 - 성과지표별 목표는 도전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목표치 설정근거 제시
 - ※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및 목표 도전성”은 선정평가 평가항목이며 미흡할 경우 협약 시 조정

< 도전적 성과지표 >

단위/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IIRIS 성과등록 시 성과항목
1 학술지게재 논문(지수)	· SCI(E) 학술지 게재(건)	· 논문
2 특허등급 (지수)	· 특허등급지수 BB이상 특허등록(건) * 한국발명진흥회 SMART 평가 'BB' 등급 이상	· 지식재산권(특허)
3 기술사업화 효과(금액)	· 사업화/제품화(건) * 연구개발성과를 실제 계약한 실적	· 사업화현황 · 매출실적
4 기술실시계약(건)	· 기술실시(이전)(건)	· 기술실시(이전)
5 연구개발성과 현장검증(건)	· 현장시험 및 검증(건) * 연구개발성과 검증을 위해 현장에 시범적용, 시험시공 등을 한 성과	-

	단위/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IRIS 성과등록 시 성과항목
6	인증(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및제품인증(건) * 형식승인, SIL, ISO, NET 등 인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지정 기술및제품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화(국내·국제)(건) * KS, KRS, IEC, IRI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화(국내표준) 표준화(국제표준)
7	참여기업의 청년인력 신규 채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인력 채용 인원(명) * 채용시점 기준으로 만 15세이상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고려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율 100%, 최소 1년 이상 고용 유지 * 목표산출근거 : 총 연구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인력 신규로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창출

○ 추후 연구개발계획 등은 수정 · 보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제 내 특정 기술개발에 대한 추진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은 추후 협약 시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필요시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과 협의여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 · 보완(연구개발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화·명확화)할수 있음
- 연구개발 추진과정에서 관련기술 환경변화 및 관련 법·제도 변화 등에 따라 연구개발내용(연구개발비 포함)이 조정될 수 있음

○ 연구성과의 현장시연 계획 필히 제시

- 신청자는 현장시연 등을 통한 연구성과의 현장중심 검증 추진계획 제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 포기 시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등을 심의·확정

- 연구책임자(신진연구자)가 타 기관에 채용되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제 중단은 아직 기관이 국내 기관이면서 연구개시일 이후 1단계 연구는 6개월, 2단계 연구는 1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

별첨**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구분	항목	비고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필수
서식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필수
서식3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서식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필수
서식5	RFP 자체검토 의견서	필수
서식6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해당시
서식7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중소기업)	해당시
서식8	청렴서약서(신청기관/연구책임자)	필수
서식9	청년인력 신규채용 확인서	해당시
서식10	신진연구자 자격 확인서	필수
참고1	연구개발과제명 작성 안내	연구개발과제명 작성시 참고
참고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개발계획서(표지) 작성시 참고
참고3	국토교통 R&D 유형별 기술성숙도	연구개발단계(TRL) 설정시 참고
참고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연구개발비 계상시 참고
참고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연구진 구성시 참고
참고6	IRIS 전산접수 매뉴얼	신청과제 인터넷 입력시 참고
참고7	2단계 대형실험센터 안내	-
참고8	국토교통 R&D 투자전략	연구개발계획서(표지) 및 연구개발내용 작성시 참고
참고9	문서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개인/대표/부서/업무)	전자공문 제출을 위한 문서24 사용시 참고
참고10	NTIS 차별성검토 이용자 매뉴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고